

「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-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「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, 같은 법 제23조의3(행위제한 등)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4일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명 칭 : 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-46번지 일대
- 면 적 : 20,561.50m²

3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조합명칭 : 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이금수)
-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22길 10, 2층

4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착수예정일 :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
- 준공예정일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
- ※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5. 조합설립변경인가일: 2025. 12. 2.

6.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

가. 행위제한 구역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-46번지 일대

나. 행위제한 대상

- 건축물의 건축, 용도변경
- 공작물의 설치
-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, 토지의분할·합병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
- 가설건축물의 건축
-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
-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

다. 행위제한 시행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의3(행위제한 등)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 제9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부터 행위제한 시행

7. 지형도면 : 붙임

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‘토지이음’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